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태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9608 발의연월일: 2025. 4. 7.

발 의 자:김태선·김병주·김영환

윤준병 • 정준호 • 김영배

허 영·위성락·장철민

박홍배 • 김주영 • 박 정

이학영 • 박균택 • 유종군

의원(1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, 사고, 노령에 따라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연간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가족돌봄휴가는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.

그런데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 및 그 가족의 다양한 사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휴가를 시간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.

이에 사업주는 일 또는 시간 단위로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일·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(안 제22조의2제4항제2호).

법률 제 호
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의2제4항제2호 본문 중 "일단위"를 "일 또는 시간 단위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2조의2(근로자의 가족 돌봄	제22조의2(근로자의 가족 돌봄
등을 위한 지원) ① ~ ③ (생	등을 위한 지원) ① ~ ③ (현
략)	행과 같음)
④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	4
휴가의 사용기간과 분할횟수	
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.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	2
최장 10일[제3호에 따라 가족	
돌봄휴가 기간이 연장되는 경	
우 20일(「한부모가족지원	
법」 제4조제1호의 모 또는	
부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	
25일) 이내]로 하며, <u>일단위</u> 로	<u>일</u> 또는 시
사용할 수 있을 것. 다만, 가	간 단위
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	
휴직 기간에 포함된다.	
3. (생 략)	3. (현행과 같음)
⑤ ~ ⑩ (생 략)	⑤ ~ ⑩ (현행과 같음)